

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(제28조제1항 관련)

사 망 자 별	지급액(천원)
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가.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나.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다.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인 사람	1,704 1,444 1,127
2. 재일학도의용군인	1,127
3. 보상금 지급대상인 유족	1,127